

공 시 송 달 공 고

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목: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
2. 법적근거: 국유재산법 제72조, 동법 시행령 제71조, 동법 시행규칙 제49조
3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점유자	점유지	점유면적	연간사용료	부과기간	변상금 예정금액
(주)그레이트온 오토모빌	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, 10층	794.64㎡ (전용 409.88)	118,800,000원	2020. 3. 15.~ 2020. 7. 23.(131일)	51,165,360원

※ 산출 서식: 연간사용료×부과기간/365×120%

4. 공고기간: 2020. 10. 26. ~ 2020. 11. 9.(15일)
 5. 의견제출 기간: 2020. 11. 9. 까지
- ※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·고지할 예정

6. 의견제출 내용

- 가.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(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)
- 나.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(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)
- 다.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(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)

7. 기타문의 안내

- 가. 서울시 종로구 종로 6, 9층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
- 나. 전화 02)6967-9223, 팩스 0505-005-1101

2020년 10월 26일

서울지방우정청장